

서울특별시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1. 改正理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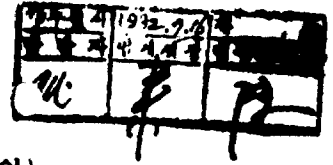
上水道料金を調整하여 料金水準이 生産原價보다 낮아 發生하는 缺損을 一部 補填하고, 給水業種 및 料率體系를 改善하여 市民에 對한 서비스 提高와 業務能率 向上을 도모코자 함.

2. 主要骨子

- 給水使用料 : 平均 5% 引上
- 給水業種 調整 : 現行 8種 → 6種
- 料率體系 改善 : 他地方自治團體와 均衡 維持
- 住居·店鋪 兼用 使用水栓에 對한 給水使用料 賦課 方法 改善
: 總使用量中 家口當 月15세계급미터를 家庭用으로 賦課

3. 合 意

- 經濟企劃院 協議 : 內務部에서 一括 協議(92.5.6)
- 關聯局 意見 收合結果 : 따로 붙임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제7항으로, 동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1개의 양수기로 가정용과 높은 효율의 다른 업종(이하 '해당업종'이라 한다)의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요금을 산정한다

1. 총사용량이 해당 업종의 기본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총사용량중 가구당 월15세제급미터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하되, 잔여량이 해당업종의 기본량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업종의 기본량을 잔여량으로 한다.

시장

2. 총사용량이 해당업종의 기본량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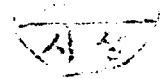
3. 제1호중 '가구'는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1인동재}판택가구·하숙생·자취생등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⑤ 1주택(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분양단위를 말한다)에서 단일양수기로 계량되는 급수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양수기로 계량되는 급수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를 말한다)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각각 가정용 효율을 적용하며, 사용총량을 사용가구 또는 사용호별로 산출된 평균사용량이 1세제급미터 미만인 단수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별표 2〉 가. 급수사용료 요율표 및 나. 급수종별구분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육탕2종으로 적용을 받는 수용가는 이조례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적용한다
- ③(급수사용료 적용예) 이조례에 의한 급수사용료는 이 조례 시행일 다음 월의 최초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가. 급수사용료 요금표

구분 업종	1개월 기본요금		초과 사용료	
	기본수량 (세제곱미터)	기본요금 (원)	사용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가정용	10	780	11-30 31-50 51이상	110 210 270
영업1종	20	2,700	21-50 51-100 101-300 301이상	300 320 340 360
영업2종	30	10,500	31-50 51-100 101-200 201-300 301이상	450 470 490 630 820
육탕1종	500	63,000	501-1,000 1,001-2,000 2,001-3,000 3,001이상	150 170 190 200
육탕2종	200	100,000	201-500 501-1,000 1,001-2,000 2,001-3,000 3,001이상	820 930 1,000 1,030 1,050
공공용	30	3,000	31이상	210

나. 급수종별구분표

1.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 (2차·3차)
- 10제곱미터미만의 업소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2. 영업용1종

-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 사설 소화전

3. 영업용2종

- 식품접객업
- 공연장
- 숙박업
-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1차)
-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 포함)
- 차량판매정비(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 예식장
- 학원 (도서실 포함 ,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 사진현상소 (1차, 2차)
- 체육시설업 (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 금융기관 (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등 포함, 전당포 제외)

- 발전소
- 이발소 (미장원 제외)
- 인쇄소, 출판사 (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 화훼, 식목업
- 빌딩(다른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 < 의료기관 제외>), 오피스텔 (신당)
- 도살장, 정육점
- 양조업, 제빙업, 제분업(방아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제조업, 의약품·화공약품·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 합성수지 제조업, 페인트류 제조업, 가구류 제조업(자재가공 포함) 연료제조 (고압가스 제조 포함)
-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피혁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 도금업 (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 제재소, 목재소 (목공소 제외)
- 요업 (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효율 적용)
-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후 건축 하는 경우에 한함)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 효율 적용)
-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4. 육탕용1종

- 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5. 육탕용2종

- 특수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 가족탕업, 한증탕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1종 → 4종)
-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2종 → 4종)

6. 공공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포함)
- 학교
- 정당
- 병영
- 신문사, 방송국
-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여가시설, 어린이집, 놀이방 : 시장
-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신·구조문대비표

현 명	계 정 안
<p>제25조(급수량의 계량조정)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신설)</p> <p>(신설)</p> <p>④(생략) ⑤(생략)</p>	<p>제25조(급수량의 계량조정)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 1개의 양수기로 가정용과 높은 효율의 다른 업종 (이하 '해당업종'이라 한다)의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같이 요금을 산정한다. 1. 총사용량중 가구당 월15^{가정용}은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하되, 잔여량이 해당업종의 기본량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업종의 기본량을 잔여량으로 한다. 2. 총사용량이 해당업종의 기본량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적용한다. 3. 제1호중 '가구'는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1인 1가구} 하숙생·자취생등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⑤ 1주택(단독주택또는 공동주택의 분양단위를 말한다)에서 단일양수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가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양수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분양단위를 말한다)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각각 가정용 효율을 적용하며, 사용총량을 사용가구 또는 사용자별로 산출된 평균사용량이 1세대급미터 미만인 단수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⑥(현행과 같음) ⑦(현행과 같음)</p>

4. 根據法令 拔萃

○ 水道法 第17條 (供給規定)

水道事業者는 長官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물의 料率, 給水裝置에 관한 工事의 費用, 其他 물의 供給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定하여 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水道事業者가 地方自治團體인 境遇에는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 地方自治法 第127條 (使用料)

地方自治團體는 公共施設의 利用 또는 財産의 使用에 대하여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 地方自治法 第130條 (使用料의 徵收條例 等)

使用料 數手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에 관한 事項은 條例로 定한다.

○ 地方公企業法 第22條 (料金)

① 地方自治團體는 地方公企業의 給付에 대하여 條例가 定하는 바에 의하여 料金を 徵收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料金は 適正하여야 하며, 이를 決定함에 있어서는 當該地方公企業이 제공한 給付의 原價를 報償함과 아울러 企業으로서의 繼續性を 維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 特別市 給水條例 第22條 (給水使用料)

給水使用料는 給水使用者 等으로 부터 別表 第2의 料率에 의하여 徵收한다.

關聯局 意見 檢討 結果

關聯局 意見	檢討 및 處理意見
<p>< 改正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養老院, 老人亭, 託兒所</u> : <u>營業用</u> → <u>公共用</u> <p>< 家政福祉局 意見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養老院 등 老人福祉施設 및 老人餘暇施設</u> (養老院, 老人亭, 療養院, 老人教室, 相談室 福祉館) : <u>營業用</u> → <u>公共用</u> ◦ <u>어린이집</u> : <u>營業用</u> → <u>公共用</u> ◦ <u>놀이방</u> : <u>營業用</u> → <u>家庭用</u> <p>事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老人福祉施設 및 老人餘暇施設은 社會福祉次元에서 非營利公益法人에 의해 運營되는 施設임 · 託兒所는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놀이방등으로 되어 있고, 놀이방은 家庭과 類似하므로 家庭用으로 分類 	<p>< 調整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老人福祉法에 의한 老人福祉施設 및 老人餘暇施設, 어린이집, 놀이방 : 公共用 <p>< 事由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養老院, 老人亭이 아닌 老人福祉施設은 非營利公益法人인 社會福祉法人에 의해 運營되는 施設이고, ◦ 阿 施設은 老人福祉次元에서 市에서 全額 또는 一部를 지원하고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療養院(5) <ul style="list-style-type: none"> 市立(1) : 全額 市費(委託運營) 私立(4) : 運營費80%, 人件費90% 市費 補助 · 福祉館(2) — 全額 市費(委託運營) · 相談室(2) — 全額 市費(委託運營) · 老人教室(94) — 老人會, 宗教團體 등에서 運營 ◦ <u>老人福祉施設中 老人亭·養老院은 公共用으로, 療養院·福祉館·相談室·老人教室은 營業用으로 區分 適用하는 것은 不合理하므로 公共用으로 一元化</u> ◦ <u>놀이방은 어린이 집과 유사한 業態이므로 公共用으로 適用</u>

서울특별시 공고 제 ¹⁹⁹²₋₁₂₉ 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2. 7. >.

서울특별시장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취지

상수도요금을 조정하여 요금수준이 생산원가보다 낮아 발생하는 결손을 일부보전하고, 급수업종 및 요율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제고와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키 위함

3. 주요내용

○ 급수업종조정 : 현행 8종 → 6종으로 축소

· 3종·7종→가정용, · 2종→영업1종, · 1종·8종→영업2종

· 5종→육탕1종, · 4종→육탕2종, · 6종→공공용

○ 일부 업태 업종변경

· 문방구, 철물 및 지물의 소매점 : 영업1종 → 가정용

· 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어린이집, 놀이방 : 영업1종 → 공공용

· 탁구장, 체육도장, 전당포 : 영업2종 → 영업1종

· 가족탕, 한증탕 : 영업2종 → 육탕2종

· 육조 및 휴재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 영업1종→육탕2종

○ 요율체계개선 : 타지방자치단체와 균형 유지

○ 주거·점포 겸용사용 수전에 대한 급수사용료 부과방법 개선 :

총사용량중 가구당 월15세제곱미터를 가정용으로 적용 부과

○ 급수사용료 : 평균 5% 인상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2. 8.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상수도
사업본부 업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5.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
(390-7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